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승강장문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꼼짝마”

승관원, 승강장문 안정성 평가설비 준공식 갖고 시험 들어가  
오는 9월부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문은 반드시 충격시험 받아야



**충격으로 인한 승강장문 이탈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정성 평가장치(사진)가 설치됐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이화석)은 1월 18일(금) 오후 4시에 이화석 원장 및 제작사 대표인 음한욱 사장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강장문 안전성 평가설비 준공식’을 갖고, 시범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시험설비는 가로 3.5m × 4.5m 크기로, 승강

장문 설치대와 충격을 가하는 타격장치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의 설치된 승강장문에 대한 현장실험이 가능토록 이동식으로 제작했다. 금년 9월 10일 이후에 설치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문은 63.4kg인 중학생 두명이 초속 2.65m로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충격(450J)에 견디도록 제작돼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승강기 문 이탈로 인한 추락사 하는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기존 승강기 안전기준인 ‘견고하게 설치돼야 한다’ 등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실제 충돌시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수치로 명기했다.

향후 승관원은 승강장문 안전시험 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노후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승강장문 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승강장문 충격 시험 설비를 갖추지 못한 대다수 국내 제작업체를 위해 평가 설비를 대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해 승관원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가두캠페인 실시하는 한편, 부착스티커 70만장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 또한 스티커에 삽입된 문구도 기존에 ‘기대지 마시오’에서 ‘기대면 추락위험’으로 변경했다.

| 기술표준 2008. 2

## 승강기 안전사고의 절반은 에스컬레이터

65세 이상 연령층 사고 많고, 지하철역사 발생빈도 높아  
이화석 원장 “E/S 다중이용시설에 안전도우미 배치필요성 강조”

2007년 승강기 안전사고 분석결과 에스컬레이터 사고 발생률이 전체사고의 절반을 차지했고, 피해자 중 65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이화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승강기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50.0%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했고, 이 중에서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75.0%는 보호자과실 또는 미동반에 의해 일어난 사고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결과로 노약자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자와 세심한 관심과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도우미 배치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로는 지하철 및 철도역사가 66.0%로 가장 높았고, 할인점 12.8%, 백화점 10.6%이 뒤를 이었다.

이와관련,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입원한 응급환자 중 65세 이상 연령층이 전체사고의 79.3%를 차지했고, 대부분 지하철과 철도와 같은 역사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들 연령층의 경우 에스컬레이터에서 걸거나 균형을 잃어버려 발생하는 전도사고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령에는 “에스컬레이터 이용시 어린이와 노

약자는 보호자가 잡고 타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향후 추진방안〉

승관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이용자가 많은 서울 지역 지하철 및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한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캠페인”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캠페인 추진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1월 10일 체결하고, 에스컬레이터 두 줄서기 대국민 확산운동 및 지하철 홍보인프라를 활용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승관원은 대한노인회와 협조해 노인정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하철 및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노약자가 승강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야 안전하다”는 내용의 ‘(가칭)에스컬레이터 안전도우미 캠페인’을 시민단체와 연계해 상반기 중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화석 원장은 “65세 이상 연령대의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하철, 백화점, 할인점 등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 ‘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기술표준 2008. 2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행사안내

2007년 제3차 시중 유통 전기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간담회 개최



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술 표준원 관련 담당자 및 3개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담당자들이 부적합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도적, 기술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2007년도 불법·불량 제품의 실태 및 단속 실적에 대한 협회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2008년 1월 24일(목), 기술표준원과 한국전기제품 안전협회 공동으로 2007년도 제3차 시중유통 전기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간담회를 협회 세미나실에서 개

○ 대상 :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장판, 등기구,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 제조 및 수입업체

|기술표준 2008. 2

## FITI 시험연구원

# FITI, 중국섬유과학연구원(CTA)와 업무협정 체결



**FITI시험연구원원장 심우정과 중국섬유과학연구원(China Textile Academy, 원장 조강은)** 2007년 12월 28일 중국내수 섬유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분야에 대해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정의 체결로 양 기관은 중국내수판매용 섬유제품에 대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GB18401(국가섬유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과 관련한 강제규정인 품질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패션브랜드 업체가 국내 시험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 직접 시험을 접수할 수 있게 되어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되었다.

이날 업무협정식에서 FITI 심우정 원장은 “한·중간 우호협력과 섬유산업의 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시험, 검사, 기술교류, R&D 연구 분야에 양 기관이 긴밀하게 공조 체계를 가동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으며 CTA 조강 원장도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번성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정은 FITI시험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전략의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산둥성 연태와 청도, 광둥성의 동관, 그리고 상해, 소주진출을 통해 우리 기업을 근접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중국내수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국섬유과학연구원(CTA)은 1956년에 설립된 국가 기관으로서 120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하에 국가방적제품품 질감독검험센터(CTTC)를 두고 있으며 국내 기업이 FITI시험연구원을 통해 중국품질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자 할 때 CTTC의 명의로 발행하게 된다.

향후 FTT시험연구원은 중국섬유과학연구원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섬유시험의 기술과 표준화 연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전개하며 지속적인 시험·검사업무의 발전을 통해 국내 섬유 패션·외류업체의 중국진출에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FTT시험연구원은 오는 2월 20일 중국섬유과학연구원(CIA)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중국내수시장 진출과 관련한 규제동향과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COEX(그랜드볼룸홀, 14시)에서 개최한다.

|기술표준 2008. 2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 안전관리지원 기관 지정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어린이 놀이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기관 및 안전관리지원기관 1호 지정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제 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1호로 지정되었다.

※ 지정분야(6개분야)

-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
- 어린이놀이기구의 정기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진단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기술표준 2008. 2